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 ○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현행화
 ○ 지자체 면책규정이 있는 손해배상 부분 수정

3. 주요내용
 ○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현행화
 - 운영시간 : 평일 06:00 ~ 21:00 → 06:00 ~ 22:00
 - 이용시간 :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에 한한다 (강습 10분전 입장 가능)
 ○ 제13조(손해배상) 지자체 면책 규정이 있는 손해배상 부분 수정

4. 참고사항
 ○ 관련근거 : 해당 없음
 ○ 관련공문 : 기획감사실-7520(2019.7.29.)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정비 안내
 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 ○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(기획감사실-11030(2019.11.1.))
 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지원과-44563(2019.10.30.))
 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'19. 11. 7 ~ 11. 27)

5. 검토의견
 ○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을 현행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써,
 ○ 평일 운영시간을 06:00~22:00으로 현행화하고 이용시간은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으로 제한하며,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자가 책임 질 수 있고 지자체의 면책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 ○ 법리 검토결과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과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성주국민체육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